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7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 개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2014 년도 북한인권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인륜 범죄를 구성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8 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그리고 9 월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자의적 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3 월과 12 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북한 정부가 그러한 인권 유린 상황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어느 비정부기구(NGO)는 당해 연도에 북한 당국에 의한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가 119 건의 살해 행위와 87 건의 실종 사건을 포함하여 1,304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과거에 북한은 자국 국경 안에서 종교 활동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구금하거나 때로는 석방한 사례가 있다. 보고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8 월에 외국인 기독교 신자 1 명을 석방했다. 비정부기구와 학자들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적 관용을 가장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한 모든 종교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나 처벌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

탈북자 증언은 종교인들이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 내 종교단체의 숫자와 신자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이 엇갈린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은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정부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10 월에 국무부는 중대한 인권 침해나 검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에 연루된 단체 2 곳과 북한관리 7 명의 명단을 적시한 제 3 차 북한인권침해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에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관심대상국(CPC)에 지정되었다. 2017 년 12 월 22 일에 국무장관은 북한을 CPC 로 재지정하고 1974 년 무역법 제 402 조 및 제 409 조(잭슨-배닉 수정조항)

그리고 동법 제 402(c)(5)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

##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전체 인구를 2,520 만 명(2017년 7월 추정치)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정부가 2002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별 신자수는 개신교 12,000명, 불교 10,000명, 가톨릭 800명이다. 해당 보고서는 19세기 한국 성리학에 기원을 둔 현대 종교인 천도교가 약 15,000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다. 무당과 상의하고 주술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널리 행해진다고 하지만 수량화하기 어렵다. 한국에 위치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러시아정교회 신부 5명이 평양에 체류한다고 보고했다. 한국 및 기타 외국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종교인 수가 북한 당국이 보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엔은 기독교 신자수를 2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로 추산하고 있다. 2012년 보고서에서 국제모통이돌선교회(CMI)는 북한에서 37,000명의 기독교 신자들과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CMI는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의 10~45 퍼센트를 기독교 신자로 추정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정부의 자체 수치에 따르면 종교 신자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0년 약 24 퍼센트에서 2002년 0.016 퍼센트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 법적 토대

헌법은 ‘시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시민들이 종교시설을 건설하거나 종교의식을 행할 기회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 조항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공식 정부문서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건강,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그 외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만들거나 유포하거나 불법적으로 보관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 형법은 “돈이나 물건을 받는 대가로 미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NGO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위의 두 조항에 따라 해외에서 반입된 종교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징역,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까지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HRNK 에 의하면, “미신행위” 금지법은 특히 점술행위를 금지하고 점술가를 투옥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다.

## 정부 관행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건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처형, 고문, 구타, 체포 등 가혹한 방식으로 대우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수용된 일부 인원을 포함하여 8 만에서 12 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외딴 지역에 위치한 정치범 수용소에 참혹한 상태로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기독교연대(CSW)는 기독교 신자를 구금하는 경우 연좌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곧 당사자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기독교 신자의 친척까지도 함께 구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놓은 바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하면, 수용소 내에서 종교 활동을 행하다가 적발된 주민이 실종된 사례들이 당해 연도에 보고됐다. 국제 NGO 들과 탈북자들은 기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읽기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활동 이외의 종교활동은 정치범 수용소 구금 등 가혹한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과거에 자국 영토 내에서 종교활동을 했다고 추정되는 외국인들을 구금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이 8 월에 외국인 기독교 신자 1 명을 석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당해 연도에 북한 당국이 자국 내에서 종교 혹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1,304 건으로 집계했다. 기소 내용으로는 선교, 종교 물품 소지, 종교 활동, 종교인과의 접촉 등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1,304 건 중 770 명(59%)을 구금했고 133 명(10.2%)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119 명(9.1%)을 살해했고, 87 명(6.7%)을 실종처리 했고, 48 명(3.7%)을 추방하거나 강제 이주시켰고, 44 명(3.4%)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6 년에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집계한 이와 같은 사례 건수는 1,247 건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에서 언급된 탈북자 11,805 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6 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에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12,032 명의 탈북자 중 단지 4.2 퍼센트가 북한에 있는 동안 성서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한 NGO에 의하면, 북한 정보기관들이 기독교 신자들과 불교 신자들을 포함한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의 인맥을 적극적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거가 2016년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그 증거를 통해 정보기관원들이 종교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들을 감금하거나 처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관련 활동가들은 북한 요원들이 2016년 4월에 한국계 중국인 한총렬 목사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중국 북동부 지린성 장백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해왔으며 탈북자들을 지원해왔다. 북한 당국은 한국에 피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6월 3일에 헤산시 당국자들이 중국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61세 노인을 구타하고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이 노인은 기독교 교회 예배에 참가했다고 하며 이로 인해 간첩 혐의를 받게 되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NGO인 재미탈북민연대에 의하면, 어느 북한 주민이 4개월간 중국에서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8년간 수감생활을 한 뒤 5월에 북한을 탈출했다. 보고에 따르면, 이 여성은 기독교 교리를 실천하고 그 ‘불온성향’을 학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수감기간 동안 당국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그녀에게 과거를 뉘우치고 마음을 ‘씻도록’ 노력하라고 했다.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로 수감된 다른 여성 여섯 명은 맞아 죽거나 약을 구하지 못해 설사병으로 사망했다고 이 여성은 말했다.

크리스천 포스트(Christian Post)지는 서울 소재 뉴코리아여성연합 소속 임혜진씨가 중국 경찰이 전원 미성년자인 탈북 고아 17명을 구금시켰다가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4월에 보도했다. 임혜진씨는 북한 정보기관원이 고아 17명 중 3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를 오래 한 나머지 무릎에 굳은살이 박혔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하며—임혜진씨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는 불법조치였고—나머지 14명은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8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그리고 10월에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에 의한 자의적 처형, 정치범수용소 운영, 반인륜 범죄에 해당하는 고문 행위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3월과 12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상황을 ‘가장 단호한 어조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북한 정부가 그러한 인권 유린 상황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고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해당 결의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COI의 결론과 권고 사항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것을 환영했다. 2014년 2월에 발간된 COI 최종 보고서는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정보·결사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부인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많은 경우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륜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인륜 범죄에 가장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 것을 유엔에 권고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 사상이 북한의 개인 우상화 정책에 저항하고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회적·정치적 조직과 활동의 토대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정부에서 통제하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박해와 폭력, 가혹한 처벌에 직면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동 보고서는 기독교 신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처벌이나 보복 혹은 감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북한에 권고했다.

탈북자들은 최근 수년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단체에 대한 조사·탄압·박해가 심해졌다고 보고했으나 현재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한국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일상 생활에서 종교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헌법은 정권이 정책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치적 지지 계층에 주어지는 명목상의 자유에 불과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7년과 2016년 4월 사이에 탈북자 11,73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9.6 퍼센트가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집권당은 당원들이 종교를 실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이전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 지도자인 김정은의 개인 우상화 정책과 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이념적 토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혹은 그 밖의 이유로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부정할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가 일종의 국가후원 이데올로기와 흡사하다고 말한다. 북한 전역에 약 10만 곳의 주체사상 연구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속 신앙이 북한 내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몇몇 NGO는 평양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무속 행위가 눈에 띄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NGO는 정부 당국이 무속 행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10월 HRNK는 최소한 1명 이상의 주민이 점술행위와 여타 ‘범죄’로 최근 수감되었다고 보고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적절한 탈북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무속인을 찾는 당원들이 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6년 현재 북한에 불교 사찰 60 곳, 천도교 교당 52 곳, 국영 교회 3 곳, 러시아정교회 성당 1 곳 등 총 121 곳의 종교 시설이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정부의 2014년도 보고서에도 불교 사찰 64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용되어 있으나 해당 직원들은 종교적 중요성을 상실했으며 문화 유산이나 관광 명소로 보존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2015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는 불교 사찰의 수가 60개로 집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불교 사찰을 종교 시설로 간주하거나 불교 승려를 종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양에는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5 곳의 기독교 교회가 있는데 세 곳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 칠골교회, 제일교회)와 가톨릭 교회(장충성당)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Life-Giving Trinity Russian Orthodox Church) 등이다.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고, 예배가 예정대로 이뤄지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다. 평양 방문 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에 갔던 방문자들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이 행사를 위해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였으며 참석자라기 보다는 참관인으로 보였다고 한다. 과거 평양 시내 또는 근교에 살았던 일부 탈북자들이 이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탈북자는 평양에 살았을 때 찬송가를 들으려고 교회 밖에 너무 오래 얼쩡거리거나 매주 예배가 진행 중일 때 그 근처를 꾸준히 지나다닌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기독교 신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탈북자는 예배 시 찬송가를 허용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록 허가함으로써 교회에 간 사람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로 전향하게 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사실을 당국이 재빨리 알아차렸으며, 이러한 결과를 막을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고, 2017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개신교 교회나 가톨릭 교회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2015년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국가가 승인한 종교 기관들이 북한에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는 또한 조선정교회위원회(Korean Orthodox Committee)의 존재를 언급했다. 2015년 남북 종교간 교류에 관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그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는 극히 미미했다.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충성당에서 기본적인 의식을 거행하지만 로마 교황청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 로마 교황청이 인정하는 가톨릭 사제나 수도자 혹은 수녀 또한 북한에 상주하지 않는다.

북한을 방문했던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주 목사인지 혹은 임시로 체재하는 목사인지는 확실치 않다.

소문에 의하면 5명의 러시아정교회 사제들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정백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고 한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북한 정부의 200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7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일부 평양 주민들은 가정 예배소에 대해 들어보았지만, 평양 밖의 주민들 대부분은 그러한 가정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정 교회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을 예배장소로 인지하지 못했다. 2017년 북한인권정보센터 백서에 언급된 11,967명의 탈북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정 교회라고 알려진 곳을 본적이 없었고 응답자의 단 1.3퍼센트만이 가정 교회의 존재를 믿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당국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 종교 활동에 참여한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소수의 교회를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증명하는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일연구원의 2017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 정치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계속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했다. 북한 현지에서 공인 종교단체 대표들을 만나본 외국인들은 일부 관계자들이 실제 교인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8 월, 북한 외부에서 활동하는 독립 뉴스 매체인 NK News 는 최근 북한 정부가 자국 성직자를 국제 기독교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킹제임스 성경의 공식 번역본을 출간함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누그러뜨린 듯한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 월 NK News 는 사립재단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으며, 이 관계자는 평양 내 개신교 교회에 가끔 나갔는데 그곳 목사의 설교가 ‘대체로 좋았지만’ 정치적으로 친정부적 성향을 보이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과 동료들은 작은 대학교 사무실에서 새벽 6 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예배를 국한시켰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 관리들이 종교 물품은 물론 정부에서 부적당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물품들을 찾기 위해 항구나 공항에서 반입되는 포장물이나 소지품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종교를 믿는 개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보고는 없지만, 정부는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활동에 연루된 인사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북한 당국이 중국에 있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여타 외국인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포함한 강제 송환 탈북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신교와 불교 성직자를 양성하는 3 년제 대학 과정, 김일성대학 종교학과, 사제를 교육하는 대학원 과정, 기독교 혹은 불교 교단과 연계된 기타 신학대학 등 특정한 형태의 종교 교육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계급과 가문을 기준으로 주민의 신분을 분류하고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견해를 기준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상징하는 성분 제도하에서 기독교 신자는 최하층을 구성한다. 성분 분류 제도로 인해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등의 분야에서 차별이 발생한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정부는 특히 기독교 신앙을 서구 외세의 침입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당국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자를 적발하고 파악하는 방법을 최소한 1 년에 2 회 이상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는 그와 같은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국경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계속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내 전도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현지 주민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정부 수행원이 항상 동행했다고 보고했다. 그와 같은 단체들의 일부 직원은 자신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탈북자 증언은 종교인들이 당국에 신고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웃, 직장 동료, 기타 사회 구성원에게 자신의 종교 활동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COI 보고서는 기독교 신앙이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연도 중에 통일연구원은 북한 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증언이 있다고 보고했으나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나 지하 종교 활동의 범위는 여전히 수량화하기 어려웠다. 일부 NGO와 전문가들은 많게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서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에서는 대규모 지하 교회의 존재에 의문을 표하고 지하 종교인들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각각의 지하 회중의 규모는 매우 소규모인 것으로 보고됐으며 일반적으로 개인 거주지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의 보고를 통해 접경 지역에서 중국 주민이나 단체와의 접촉을 계기로 북한 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종교 물품을 입수할 수 있게 됐으며 비밀 종교 회합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NGO 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되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된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신도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이들을 긴밀하게 감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북한을 방문한 일부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교회 활동이 연출된 것처럼 보였고 사전협의 없이 교회에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통일연구원이 전했다.

통일연구원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교구를 운영하는 공인 종교단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결혼이나 장례 등과 관련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과 관여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 밖의 다른 수단들을 동원했다.

미국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결의안들을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이 결의안들을 3 월과 12 월에 채택했다. 또한, 이 결의안들은 북한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거의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정부가 이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0 월 26 일에 국무부는 제 3 차 북한인권침해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나 검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그에 연루된 단체 2 곳과 정부관리 7 명의 명단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는 근로자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집중적인 강제노동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표현, 평화적인 집회, 결사, 종교 혹은 신앙,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차관과 대북특사를 포함한 미국의 고위 정부 당국자들은 탈북자 및 일부 기독교 인권단체 등 북한 관련 NGO 들과 만남을 가졌다.

2001 년 이래 북한은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했다는 이유로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되었다. 2017 년 12 월 22 일에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을 CPC 로 재지정했으며 CPC 지정에 수반하여 무역법(1974 년 제정)(잭슨-배닉 수정조항) 제 402 조와 제 409 조 그리고 동법 제 402(c)(5)호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행중인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확인했다.